-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담당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 제 목 [공동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 **날** 짜 2016. 5. 20. (총 4 쪽)

논 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1.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2. 우선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운영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별도의 직제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로 위임한 것도 문제이

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테러센터의 실권을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2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대테러센터 직제 (안)은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원 총 32명 중 최대 8명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울 수 있고, 특히 대테러정책관을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운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3. 국무조정실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은 기존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되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기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한 것이었고,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구속력이 있는 법규이다. 훈령의 내용이라도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지침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으로 운영해왔던 것 자체
- 4. 또한 국무조정실은 테러방지법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안)에서 10개의 전담조직을 두 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정한 법에서는 전담조직이라는데 글자만 있을 뿐인데, 무려 10개나 되는 기구를 새로이 창설하고 여기에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 위임하라'는 헌법 제7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모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위헌이다.

5.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 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도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고.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 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기존 해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사회질서나 치안을 위협하는 대내적 폭력에는 경찰력으로, 외부침략과 같은 대외적 폭력에는 군대를 동원해 행사한다. 국가폭력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면 사용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그 발동의 구체적 인 요건과 절차가 법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합법적 폭력 가 운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발동될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 령이다. 헌법 제77조에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예외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고 있는바, 이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의 지휘·통제는 '현장지휘본 부의 장'이 하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적어 도 자국민에 대한 군대의 사용을 헌법 합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려면 국회가 개입하여 군대의 출동이나 철수 등에 대하여 보고 청취, 의결 등 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차 지난 4월 29일, 테러진압 활동은 군대의 동원사항이 될 수 없고, 동원된다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본질적인 성격은 군 병력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법률에 준하여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하나, 시행령(안)의 요건은 헌법과계업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6. 또한 인권보호관의 경우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인권침해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기한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국 가정보원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각각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관과 통신사업자 관계가 갑을 관계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 사업자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 비춰볼 때 테러방지법의 경 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끝